

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996. 1. 22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1월 12일
- 회부일자 : 1996년 1월 12일

3. 제 안 이 유

- 학교신설,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분교장개편, 분교장폐지, 지적 정리에 따른 지번부여,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교명변경과
- 교육법 제8조, 제75조 및 제81조 등의 개정(법률 제5,069호, '95.12.29)으로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함

4. 주 요 골 자

- 신설 학교(청원군 오창고등학교외 5교) : 불임
- 분교장개편 학교(청원군 기암국외 6교) : 불임
- 분교장폐지 학교(제천시 금성국 장선분교장외 8교) : 불임
-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(청주시 교동국민학교외 3교) : 불임
- 교명변경 학교(청주시 산남국민학교) : 불임
-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명칭변경 학교(청주시 주성국외 310교) : 불임
- 다른 조례의 개정(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외 3건) : 불임

## 5. 검토 보고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

-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한 급격한 교육인구 이동으로 청주·청원지역에서 증가하는 중학교 졸업생 수용 및 2부제수업 해소와 과대학교를 분리하기 위한 '96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초·중·고등학교의 6개교의 신설요인이 발생되고
- 전학년이 3학급 이하일 경우 본교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분교장은 지역 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되, 3복식 대상학교를 우선 통폐합 하는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라 분교장개편학교 6개교, 분교장폐지학교 8개가 발생되고
-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학교 3개교가 발생되고
- 행정구역인 수곡동과 학교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교명변경을 요구,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명변경을 하는 등

'96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따른 변경과 지역주민의 요구와 합리적 이유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교육법 제8조, 제75조 및 제81조 등의 개정(법률 제5,069호 '95. 12. 29)으로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명칭변경하고, 적용 내용의 통일성으로 미루어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

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6. 개정 조례안 : 별첨